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3004

제출연월일 : 2024. 8. 20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본인과 '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'의 소득·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18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"을 "가구원(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"으로 한다.

제7조의7제1항 중 "부양의무자"를 각각 "가구원"으로 하고, 같은 조제3항 중 "부양의무자가"를 "가구원이"로 한다.

제7조의8제1항 중 "부양의무자가"를 "가구원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부양의무자"를 "가구원"으로 한다.

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부양의무자가 없는"을 "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이 항에서 같다)가 없는"으로 한다.

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생계급여·의료급여"를 "생계급여·주거급여·의료급여·교육급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아 혂 행 개 정 제7조의6(교육지원 신청) ① (생 제7조의6(교육지원 신청) ① (현 략) 행과 같음)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 가구원(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 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다음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-----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 • ④ (생 략) 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 제7조의7(조사·질문 등) ① 국가 제7조의7(조사・질문 등) ① ----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(제7조의5제 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 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 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 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 •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

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,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② (생략)

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<u>부양의무자가</u>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 하거나 조사·질문을 거부·방 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 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.

④ (생 략)

제7조의8(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
국가보훈부장관은 「금융실명
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
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
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
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
가 제7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
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
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

키 ^그 이
<u>가구원</u>
① (청체코 가O)
② (현행과 같음)
③
-1 7 A) +1
<u>가구원이</u>
•
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의8(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
<u>가구원이</u>

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「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|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 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 게 금융정보 · 신용정보 또는 보 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교육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」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 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 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.

③ ~ ⑦ (생 략)

제8조의2(양로지원) ① 다음 각 저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 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부양의무

자가 없는 사람(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31조(자료의 제공 요청 등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 록정보, 가족관계등록사항, 재 외국민등록사항, 군복무에 관한 자료, 국세 · 지방세에 관한 자 료, 소득 · 재산에 관한 자료, 국 민연금 · 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 •보험에 관한 자료, 생계급여 <u>·의료급여</u> 수급에 관한 자료, 출입국 정보, 사망원인통계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 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기밀,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~ 11. (생략)

<u>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</u>
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
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가 없
<u> </u>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31조(자료의 제공 요청 등) ①
<u>생계급여·</u>
<u>주거급여 · 의료급여 · 교육급여</u>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[별지 제1호서식]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•항(조제목)	주요내용		
		종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		
		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		
1	안 제7조의6	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본인과 '생계 또는 주거를 같		
1	(교육지원 신청)	이 하는 가구원'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		
		이 어려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		
		것임.	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ç	펀번	조·항(조제목)	(조제목) 미첨부 근거 규정	
	안 제7조의6		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	
1	(교육지원 신청)	: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		

2. 상세 사유

○ 교육지원을 위해 최근 5년 간 생활수준조사 신청을 한 대상자는 12명이며,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은 없어 추가 예산 불필요

Ⅲ. 부대의견

○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은 30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 가능 하며, 대상자와 그 자녀의 나이를 고려할 때 교육지원 신청인원이 많지 않음

Ⅳ. 작성자

O 성명

주무관	사무관	과장	실장・국장
김미정	김진숙	윤석진	최병완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진숙	044-202-5658	jinsk1204@korea.kr